

부패방지방침

1. 회사는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패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입니다.
2.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, 약속, 제공할 수 없으며,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, 수락, 받을 수 없습니다.
3. 임직원은 회사의 부패방지방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합니다.
4. 회사는 뇌물 리스크 방지 및 감경 등 뇌물수수의 위험에 맞서기 위하여 부패 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.
5. 부패방지 관리책임자(준법감시인)는 부패방지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·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.
6. 임직원은 뇌물관련 법령 또는 본 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위반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.
7. 회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,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.

대표이사 이 은 호